

#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12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전병주, 김성준, 김원중,  
박승진, 박칠성,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상옥,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최기찬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기본적 권리이지만, 여전히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시행계획, 실태조사, 보급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점자법」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등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1)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규정단일 미영향] 계획 수립은 통상 기준 내부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기에 해당규정이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제6조(실태조사)	○	[통상적 사례 토대 자체추계] 실태조사 비용이 소요되나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 사례 및 각종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추계함2) ⇒ <b>총 54,488천원</b> (1회당 27,244천원, 추계기간 내 2회 가정)
4	제7조(보급 및 지원)	△	[정책적 구체화 필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필요비용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구체화3) 된 바 없어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제8조(기념행사)	△	[정책결정 전제 필요]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검토계획4)된 바 없어 현재로선 객관적 추계가 곤란
6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5)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실태조사 실시 비용(안 제6조)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서울시 차원 실태조사 가정] 국가단위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조사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경우(유사증복을 제외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가정하여 최소단가 설정)를 가정하여 추계한 금액임
- 3) [제공관련 구체적 결정 필요] 市주관 및 민간 주최행사 안내문 제공 수량 등에 따라 총소요비용이 달라지며, 안내문 제작 단가(P) 또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 4) [행사별 소요비용 상이] 서울시 차원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사장소, 규모, 참석인원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지므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대략적인 결정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소요비용 추정이 가능함
- 5)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전제

- (실태조사) 통상적인 실태조사 비용 및 각종상황을 고려하여 임의가정
  - (조사주기)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제31조 의거) 주기를 참고하여 3년을 임의가정
  - (소요금액) 27,244천원 가정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 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라. 방법

- (자체추계) 통상적인 실태조사 비용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기준을 토대로 자체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54,488천원(연평균 27,244천원 × 2회)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6조)	27,244	-	-	27,244	-	54,488
	소계(a)	27,244	-	-	27,244	-	54,488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7,244	-	-	27,244	-	54,488

###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sup>6)</sup>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인 실태조사 사례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조사가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조사목적, 내용, 방식 등(실태조사 비용변동 요소)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통상적인 조사비용 중 하나의 예시로써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실태조사 실시 비용(안 제6조)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54,488천원(연평균 27,244천원 × 2회)

나. 항목별 연간 비용 = 27,244천원

- 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비용(실시 주기에 따라 추계기간내 2회 발생)
  - (인력구성)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1명 / 연구보조원 1명
  - (용역기간) 3개월
  - (소요금액) 인건비(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 운영비(제본비, 기타 일반운영비)

① 인건비 = 25,344천원

$$\begin{aligned} &= \text{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 \times \text{용역기간} \\ &= 8,448\text{천원}^7) \times 3\text{개월} \end{aligned}$$

② 운영비 = 1,900천원

$$\begin{aligned} &= (\text{제본 단가} \times \text{수량}) + (\text{기타 일반운영비 단가} \times \text{용역기간}) \\ &= (10\text{천원} \times 100\text{부}) + (300\text{천원} \times 3\text{개월}) \end{aligned}$$

7) [최소단가 가정] <서울시 계약심사 매뉴얼> 원가계산서 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보수월액(3,706천원), 연구원 보수월액(2,842천원), 연구보조원 보수월액(1,900천원) 지급 가정